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1 선고 2022가단12907 판결 [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18.

판 결 선 고 2022. 9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9,594,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3. 18.부터 2022. 7. 20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지원

별지